| 의안 번호 | 111 |
|---|---|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10.27)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 창 원 시 의 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2026.10.27.

산업경제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10. 16. 창원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6. 10.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10.27.)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자: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가.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성장(설립, 인지정 교육 등) 및 지속가능성 증대(역량강화, 애로해소, 판로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네트워크, 발전포럼 등)를 통해 지속가능한 창원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나.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24.1.1.~'26.12.31.) 만료 예정됨에 따라,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고 풍부한 현장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함.

다. 이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에 의거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사무명 :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및 제16조(위탁관리 및 운영)
-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 필요성

- (전문성 확보) 다양한 조직(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수요에 맞게 맞춤형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전문성 구비
- (효율적 업무 추진)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경영 역량 제고, 판로 개척, 애로 해소, 사회적 가치 및 생태계 활성화 등 지원 업무 효율적 수행

### 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심사, 감독 및 평가 지원
○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 및 교육
○ 경영 · 노무 · 회계 · 마케팅 · 교육 · 홍보 등 경영활동 지원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과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라.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소 재 지 :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관리동 201호
  (대원동,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내)
- 조직구성 : 센터장(비상근) 1명, 직원(상근) 4명
- 시설현황 : 사무실 97.5㎡(사무 및 상담)

○ 위치도 및 전경사진




## 마. 민간위탁 기간 : 3년(2027. 1. 1. ~ 2029. 12. 31.)

## 바. 민간위탁 예산 : 338백만 원 * 2026년 329백만원

○ 인건비 : 188.9백만 원 / 운영비 49.1백만 원 / 사업비 100백만 원

##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선정

※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전문성] 직영 시 직원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반면, 민간위탁 시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안정성・효율성] 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인・지정 교육, 조직역량 강화, 애로 해소, 스케일업, 판로개척, 네트워크 활성화 등)은 현장과 상시적인 상호소통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인력과 네트워크를 구비한 민간기관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투명성] 사업계획 승인, 지도・점검, 위탁금 분기별 정산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무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가 가능함.

○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시, 민간재위탁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자. 성과평가 결과

○ 평가기간 : 2024. 1. 1. ~ 2026. 8. 31.

○ 평가결과 : 84점 / 우수 등급 * (우수) 89점~80점

○ 주요성과

-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성장・판로・역량 강화・네트워크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
- 컨설팅(애로해소 등) 기업 역량강화 교육,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기업 및 제품 홍보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조직 역량 강화 및 자생력을 제고함.

- 홈페이지・SNS(인스타, 카카오톡 등) 다양한 홍보채널과 시민 대상 교육・행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여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사회적경제기업 부문별, 유관기관, 지원기관, 중앙・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간 교류 및 협업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충실한 역할을 수행함.

## 4.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전현주)

○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임.

| **※ 재위탁 및 재계약(「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
| - 재위탁: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br>- 재계약: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

○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5항은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사무명,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사무의 내용, 시설 개요, 위탁기간, 위탁예산, 수탁기관 선정방식, 적정성 검토 결과, 성과평가 결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임.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1]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 중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경영 컨설팅, 교육, 판로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은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인력 확보와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2]은 시장이 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근거와 범위는 명확한 것으로 판단됨.

○ 위탁기간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제2항은 “위탁기간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1)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심사, 감독 및 평가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8.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 및 교육
9. 경영·노무·회계·마케팅·교육·홍보 등 경영활동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과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한 조례」에는 위탁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제출된 재위탁 기간(2027. 1. 1. ~ 2029. 12. 31., 총 3년)은 조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임.

○ 지원센터는 2019년 3월 개소 이후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이 세 차례 연속으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관리동 사무실(97.5㎡)에서 센터장(비상근) 1명과 상근직원 4명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인지정 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홍보 및 네트워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현황>**

| 구분 | 위탁기간 | 수탁기관 | 비고 |
|---|---|---|---|
| 1차 | 2019. 3. 1. ~ 2021. 2. 28. |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 센터 개소 |
| 2차 | 2021. 3. 1. ~ 2023. 12. 31. | 〃 | 2년 10개월 |
| 3차(현행) | 2024. 1. 1. ~ 2026. 12. 31. | 〃 | 2023. 12. 선정 |
| 본 동의안 | 2027. 1. 1. ~ 2029. 12. 31. | 공개모집 예정 | 3년 |

○ 2027년 민간위탁 예산은 338백만 원(시비)으로 2026년 329백만 원 대비 9백만 원(2.7%)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188.9백만 원(55.9%), 운영비 49.1백만 원(14.5%), 사업비 100백만 원(29.6%)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탁기간 3년간 총 10억 원 이상의 시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당시 위탁금 335백만 원 중 인건비와 운영비가 약 250백만 원인 반면 사업비는 약 89백만 원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번에 사업비가 100백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인건비·운영비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국·도비 공모사업 연계 등 외부재원 확보와 사업비 중심의 운영 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의2제1항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성과평가(평가기간 2024. 1. 1. ~ 2026. 8. 31.) 결과는 84점으로 ‘우수’ 등급에 해당하여 재위탁을 추진하는 데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의안에 제시된 주요성과는 생태계 조성 기여, 자생력 제고, 시민 인식 제고 등 정성적 서술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지표 별 점수와 인·지정 지원기업 수, 컨설팅·교육실적, 판로지원 성과 등 정량적 실적이 제시되지 않아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평가지표별 세부 점수와 연도별 핵심 실적자료의 보완 제출이 필요하며,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심사 시 성과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명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점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타당함. 다만,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 절차의 공정성, 수탁기관 임원 겸직,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점검·감독 기능 등에 관한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최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 주요 지적사항>**

| 구분 | 주요 지적사항 |
|---|---|
| 2022년<br>행정사무감사 |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에 대한 지원센터의 발굴·감독 기능 미흡, 수탁법인 대표의 관련 심의기구 위원 참여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 |
| 2024년<br>행정사무감사 | 수탁기관 선정 심사표의 서명·날인 없는 점수 정정(6건) 및 평가항목 미표기(28건), 운영총괄 팀장의 수탁법인 임원 겸직, 공문상 수탁법인 명칭을 병기한 센터 명칭 사용 |
| 2024. 11.<br>상임위원회 |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약 500개소) 대비 시 담당인력(3명) 부족에 따른 지원센터의 1차 점검 기능 강화 필요 |
| 2025년<br>행정사무감사 | 자활기업·마을기업의 혁신타운 입주 및 지원 소외, 보조금 지원기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시 보고체계 구축 필요 |
| 2026년도<br>예산안 심사 | 지원센터 세부사업(11개)의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점검 필요 |
| 2026년<br>행정사무감사 | 상권활성화재단 기능강화 연구용역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운영 방안 제시 |

○ 특히, 동일 수탁기관이 개소 이후 약 8년간 연속 수탁해 온 상황에서 직전 수탁기관 선정 시 심사표 정정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으므로, 이번 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 제11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제3항에 따른 선정결과 공고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현 위탁기간이 2026.12.31.에 만료되는 만큼, 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체결이 연내에 완료되어 2027. 1. 1.부터 지원센터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4년 재위탁 당시 협약 내용 수정으로 사업비 교부가 지연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협약 체결과 사업비 교부 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제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과정에서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정량적 성과지표 관리와 사업비 비중 확대, 자활기업·마을기업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평가 항목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그간 지적된 임원 겸직, 명칭 사용 등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요지: 기재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동의)**

8. 소수의견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